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 신설 〉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28호)

2024.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 신설	3
※ 참고자료	11
1. 다문화가족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통·번역서비스 비교	1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7. 1.

다. 회 부 일 : 2024. 7. 2.

II. 제안이유

‘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26만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가족의 한국 생활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중요한 시점임. 이에 전국 시·군·구 단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등 다문화가족에 속하지 않는 재한외국인도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집합 교육, 가족 상담, 대상별 특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실상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고, 다문화가구 중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및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1인 가구도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 신설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자에 ① 「국적법」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1인 가구, 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²⁾에 의한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3(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12조제4항에 규정된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 또는 가족에 대하여도 제공할 수 있다. 1.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1인 가구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

1)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을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현행법³⁾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은 이 법의 지원대상인 다문화가족⁴⁾으로 한정되어 있음.

한편, 다문화가구⁵⁾ 중에서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55,669 가구로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 ③ (생략)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 ⑦ (생략)

4) 결혼이민자등(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므로 다문화가족에 포함됨.

5) 다문화가구에 대한 정의는 법률에 없고,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다문화가구는 귀화자가 있는 가구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를 말함.

전체 다문화가구(399,396 가구)의 13.9%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약 175만 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등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이 존재하고 있음.

< 2019년~2022년 다문화가구 구성 현황 >

(단위: 가구,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A)	353,803	367,775	385,219	399,396
1인 가구(B)	42,099	44,719	53,563	55,669
2인 이상 가구	311,704	323,056	331,656	343,727
1인 가구 비율(B/A)	11.9	12.2	13.9	13.9

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 2022년 외국인주민 현황 >

(단위: 명)

총인구	외국인주민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계
51,692,272	1,752,346(3.4%)	223,825(0.4%)	282,07(0.6%)	2,258,248(4.4%)

주: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22.11.1.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를 토대로 작성함.

자료: 행정안전부

현행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⁶⁾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귀화(인지)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고, “결혼이민자등”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인지·귀화자 1인 가구 및 재한외국인(결혼이민자⁷⁾ 제외)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귀화자 1인 가구와 결혼이민자가 아닌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에게도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상담 등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함.⁸⁾

이에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귀화(인지)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1인 가구 및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법적 근거하에 이들에 대한 지원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거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에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1인 가구를 포함하는 것은 ① 대한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건강가정기본법」⁹⁾은 가족정책의 대상을 1인 가구까지

7) 재한외국인 중에서 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임.

8)(한국어교육)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에게 TOPIK(한국어능력시험) 읽기·쓰기·듣기 등 7개의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통·번역서비스)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시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필요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9) 「건강가정기본법」은 2018년 1월 16일 가족정책의 대상을 1인 가구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1인 가구를 정

확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1인 가구에 대하여도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한 모든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한 1인 가구는 이 법의 지원대상인 다문화가족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국적을 취득한 1인 가구에 필요한 지원업무 즉, 법 제12조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의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에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가족실태조사에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음.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 2. (생략)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 4. (생략)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략)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③ ~ ④ (생략)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생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법 제12조제4항)>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에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을 포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하여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 및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을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까지 확장할 경우 자칫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등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외국인주민의 수가 226만여명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 및 예산 등 지원여건이 충분한 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재한외국인과 그 가족은 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¹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받거나 민원에 관한 통역·번역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이주민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¹¹⁾

다만,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 등 지역 특성과 센터의 인력, 예산 등 지원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각 지역별로 지원대상 확대 가능 여부, 확대 시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등) ① 공공기관장은 재한외국인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거나 민원에 관한 통역·번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1) 현재도 사업지침 상 일부 서비스(기본 상담 및 교육, 통번역, 자녀 언어발달·기초학습·진로설계 지원 등)는 외국인 가족도 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외국인 가족을 지원하고 있음. 2023년 기준 외국인 부모 30,820명, 외국인자녀 45,443명, 유학생 부모 1,544명, 유학생 자녀 429명 등 총 78,236명의 외국인 가족이 센터의 지원을 받음.

법무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무관한 재한외국인 및 귀화한 1인 가구로 확대하려는 것은 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목적과 배치되고, ②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재한외국인과 귀화 후 3년 이내 국적취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 정보제공 등의 업무와 중복되어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며, ③ 재한외국인 등 지원 방법에 대하여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범정부적인 외국인정책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전체 재한외국인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이민자에 대한 인식 악화 및 국민역차별 논란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649

[참고자료 1] 다문화가족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통·번역서비스 비교

구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법무부)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 창구(국번없이 1345)
내용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시 통번역 ○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필요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 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출입국민원 상담 및 생활편의 제공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기관의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 통역서비스 지원 ○ 외국인을 위한 마을번호사 제도 3자 통역서비스 지원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센터별 1~4개 언어 ** 해당지역 센터에서 지원되지 않는 언어에 대한 통번역은 인근 센터로 연계 지원	○ 20개 언어 *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몽골어, 인니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이용 방법	○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출장(외부) 등	○ 평일 09:00~22:00 전화 상담서비스